

스튜디오사용 규칙

전부개정 2016. 5. 18

개정 2021. 6.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촬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시설”이라 함은 영화 등의 촬영을 하기 위한 실내스튜디오, 아쿠아스튜디오, 액션스튜디오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세트제작실, 분장실, 휴게실, 프로덕션 사무실, 식당(실내스튜디오 사용자), 분장실, 샤워실, 체력 단련실, 운영 사무실(아쿠아 스튜디오 사용자) 등의 스튜디오 이외의 각종 편의지원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진흥원의 촬영시설을 대여 받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대여승낙”이라 함은 별지 2호 “촬영시설 대여약정서“를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①이 규칙에 의한 스튜디오 등 촬영시설 사용대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 제작자가 의뢰한 작업과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이 의뢰하는 작업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작시설 및 종류) 이 규칙에 의하여 대여하는 촬영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A 스튜디오 28m × 39m × 18.9m(1,138.5㎡/345평)
2. B 스튜디오 26m × 36m × 18.9m(663.3㎡/201평)

3. 아쿠아 스튜디오 15m × 10m × 10m(H)
 - 수조크기 : 12m × 7.2m × 5.6m(H)
 - 촬영용 아크릴창 크기 : 7m × 3m(H)
4. 액션스튜디오 19.5m × 29m × 20m(H) (565.5㎡/171.06평)

제5조(대여원칙) 촬영시설의 대여는 [별지 1호]의 “촬영시설 대여 신청서” 접수 순위를 우선으로 하며 제7조(대여승낙)에 의거하여 사용자 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신청) 제3조(대여대상)에 의거하여 촬영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1호]의 “촬영시설 대여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승낙) 대여 신청한 사용자가 다수 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 진흥원이 결정한다.

1. 총 대여일수(A, B, 아쿠아 스튜디오, 액션 스튜디오 포함)
2. 이전작품의 대여종료 후 공실기간
3. 지역영상 인프라 사용계획 및 로케이션 촬영회차
4. 기타 지역경제 및 영상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

제8조(대여거부 및 보류) 진흥원은 제6조에 의한 촬영시설 대여 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여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대여조건) 제7조에 의하여 촬영시설을 대여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촬영시설을 촬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촬영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촬영시설 대여승낙을 받은 후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 손·망실, 기기고장, 시설파손, 인명피해 등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특수촬영 시(화재, 충격, 연무, 물 등)사전에 진흥원과 반드시

상의 하여야 한다.

5. 촬영시설 사용 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추가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6. 촬영시설의 사용 후에는 촬영에 이용한 세트 및 기타 설치물을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복구·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중지 및 취소) 촬영시설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촬영시설의 파손,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2. 사용자가 제9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
3. 사용자가 스튜디오 대여료 및 각종 제비용을 미납하였을 때
4.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
5.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 때

제11조(대여기간의 간주) ①촬영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중단기간에 대해 그 원인이 진흥원에 의한 사유가 아닐 때는 사용기간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용자의 문제 등으로 인한 촬영중단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세트를 철거해야 한다. 단, 제10조 제5호에 의하여 촬영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촬영시설 사용 종료 후 철거시작 2일 이내에 촬영에 이용한 세트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며 철거기간에는 대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2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부과하며 철거일을 촬영일로 활용할 수 없다.

③사용자가 추가로 촬영신청기간 이외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사용자와의 일정협의 이후 연장사용을 결정하며, 사용자는 촬영종료 시점에서 진흥원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무리한 일정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사고처리) ①촬영시설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한다.

②촬영시설 대여승낙 후 촬영시설의 손·망실, 고장, 파손, 인명피해 등

의 사고 발생 시는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촬영시설물에 대하여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 및 대체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이 산정한 바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3조(대여료 및 공공요금) ①대여료는 “스튜디오사용 선금”, “스튜디오사용 잔금”, “공공요금” 으로 구분한다.

②촬영시설에 대한 대여료는 [별표 1] “촬영시설 대여료” 에 의한다.

③사용자는 대여신청서에 의거 산정된 대여료의 선금 50%(부가세별도)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납하고, 대여료 전액은 사용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④제작사의 사정에 의해 촬영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일찍 종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공공요금은 사용자가 촬영시설 사용 종료 후 계량을 확인하고 진흥원에서 산정한 비용을 현금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대여 취소 조건) 스튜디오 사용 취소 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최종사용 예정일 30일전 까지 선금 전액반환
2. 최종사용 예정일 15일전 까지 50%공제 후 반환
3. 최종사용 예정일 14일 이내 반환불가

제15조(대여료 감면사항) ①스튜디오 대여료 감면은 사용신청 기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전체일수의 감면사항은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 아쿠아 스튜디오, 액션 스튜디오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1. 해외 촬영작(공동제작 포함)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2. 31일 이상 사용 시 30%를 감면적용 한다. 단, 지역 제작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30% 감면 적용한다.

② 단 대여료 감면사항은 중복적용 하지 않는다.

③ 진흥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튜디오 사용은 진흥원과의 협의 후에 감면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미수금에 대한 조치) ①진흥원에서 촬영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한 후 해당금액을 미납한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스튜디오 사용 및 진흥원의 각종 촬영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다.

②당해 사용자 등의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임대관리) 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물 등 고정자산의 일부를 임대·관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영화 촬영 시설을 제외한 사무공간, 지원공간 등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제한한다.

제18조(기타) 스튜디오 임대사용 및 고정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촬영스튜디오 요금현황

1. 실내 스튜디오 대관요금

A Studio 1일 대여료	700,000원(VAT별도)
B Studio 1일 대여료	550,000원(VAT별도)

◆ 전기요금 (적용단가: 한국전력 기준)

- 전기요금 계산방식:【기본요금+(실사용량X해당요금)】
- 해당요금 적용비용: [한국전력 일반용(을)]

기본요금	여름(7,8월)	봄.가을(3~6,9,10월)	겨울(11~2월)
6,660원	87.90원	64.40원	80.70원

- A studio 전기 기본요금: 7.7kW(전등 부하용량) × 6,660원 = 51,280원
- B studio 전기 기본요금: 4.7kW(전등 부하용량) × 6,660원 = 31,300원
- ※ 사용요금은 검침에 의한 실비부과

◆ 냉난방요금

냉 방 료	40,000원/H(VAT별도)
난 방 료	23,000원/H(VAT별도)

※ 지원시설(사무실, 분장실)의 전기 및 냉난방 비용 등은 무료

◆ 온수보일러 요금("무료"이나 스튜디오 내부 활용 시 요금 부과)

- 보일러 가동료 5,000원/H(용량차이)

◆ 상하수도요금(적용단가 : 상수도사업본부 기준)

- 사용량(m³)에 따른 실비 부과

2. 아쿠아스튜디오 대관요금

Aqua Studio 1일 대여료	640,000원(VAT별도)
--------------------	-----------------

◆ 전기요금 (적용단가: 한국전력 기준)

- 전기요금 계산방식:【기본요금+(실사용량X해당요금)】
- 해당요금 적용비용: [한국전력 일반용(을)]

기본요금	여름(7,8월)	봄.가을(3~6,9,10월)	겨울(11~2월)
7,220원	114.5원	84.1원	114.7원

- 아쿠아스튜디오 전기 기본요금: 5.1kW(전등 부하용량) × 7,220원 = 36,720원
- ※ 사용요금은 검침에 의한 실비부과

◆ 상하수도요금 (적용단가: 상수도사업본부 기준)

○ 상수도요금 계산방식

-【기본요금+(실사용량X해당단가)+물이용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 하수도요금 계산방식

- 기본요금+(실사용량X해당단가)

○ 해당요금 적용단가: 상수도: 일반용, 하수도: 업무용

구경별 기본요금	상수도 단가	하수도 단가	물이용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43,410원	960원	760원	160원	193원

※ 사용요금은 검침에 의한 실비부과

※ 수질 오염에 따른 폐수발생 시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하수비용 대체)

◆ 도시가스요금 (적용단가 : 충남도시가스사업 본부)

○ 도시가스요금 계산방식

-【사용량+(검침량X보정계수X열량계수X단가)+(계량기 교체비용)】

○ 해당요금 적용단가

보정계수	열량계수	단가
0.9962	43.2520	22.9492

※ 사용요금은 검침에 의한 실비부과

◆ 참고: 아쿠아스튜디오 전체 급배수 시 상하수도 소요비용(수조 380^m 기준)

○ 상하수도 총요금: 831,150원

- 상수도요금 기본요금: 43,410원

- 상수도 사용요금: 사용량(380^m) × 960원 = 364,800원

-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사용량(380^m) × 160원 = 60,800원

-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사용량(380^m) × 193원 = 73,340원

- 하수도요금: 사용량(380^m) × 760원 = 288,800원

※ 수조급수(배수) 시 13시간 소요

◆ 참고: 수조 온도 10^{°C} ⇨ 27^{°C} 상승 시 도시가스 소요비용

○ 도시가스 요금: 789,080원(VAT별도)

- 사용량(798^m) × 0.9962 × 43.2520 × 22.9492 = 789,080원(VAT별도)

※ 최소 52시간 소요

3. 액션스튜디오 대관요금

1일 대여료	200,000원(VAT별도)
--------	-----------------

※ 24시간 기준

※ 전기 사용요금은 대관료에 포함함

◆ 냉난방요금

냉 방 료	40,000원/H(VAT별도)
난 방 료	23,000원/H(VAT별도)

※ 지원시설(분장실, 샤워실)의 전기 및 냉난방 비용 등은 무료